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치안·소방·교정 공무원의 자녀 추가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80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 옥 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치안·소방·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자녀 추가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17.

다. 회 부 일 : 2025.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소방·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치안·소방·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자녀 추가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u>6의2.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및 그 밖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자녀</u>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 현재 시간제서비스(기본형, 종합형)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로 구분하여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마)¹⁾에 따라 정부가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차등지원하고 있음.

현행법 제13조의2²⁾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

1) <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영아종일제, 취학 전		취학 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85%)	1,826원(15%)	9,136원(75%)	3,044원(25%)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나형	120% 이하	7,308원(60%)	4,872원(40%)	4,872원(40%)	7,308원(60%)	
다형	150% 이하	3,654원(30%)	8,526원(70%)	2,436원(20%)	9,744원(80%)	
라형	200% 이하	1,828원(15%)	10,352원(85%)	1,218원(10%)	10,962원(90%)	
마형	200% 초과	-	12,180원(100%)	-	12,180원(100%)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중위소득 200%이하 청소년(한)부모 0~1세 가정 이용요금의 90% 지원

2)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녀, 차상위 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시 해당 요건별로 가점을 중복하여 부여받으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우선 연계를 진행하고 있음.

< 우선순위에 따른 자격요건별 가점제 기준 >

○ 자격요건에 따른 가점 부여

- 법에 의한 우선순위 요건 중 해당 시마다 가점 5점 부여

-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의 자녀
- ② 장애부모 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가정(5점), 이외 장애는 (3점)]의 자녀
- ③ 맞벌이 가정(취업 한부모 및 취업 예정자 포함) 자녀
- ④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의 자녀

- 법에 의한 우선순위 요건 중 해당 시마다 가점 3점 부여

- 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 ② 장애부모 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가정(5점), 이외 장애는 (3점)]의 자녀
-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형제 자매가 있는 아동
-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 ⑤ 다자녀 가정의 자녀(12세 이하 3명, 36개월 이하 2명)
-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상이등급 1급~3급 해당 가정의 자녀

○ 대기 1개월마다 가점 1점을 부여, 5개월 이상 대기 시 추가 5점의 대기가점(최대 10점) 부여하고 6개월 시점부터 추가 5점 부여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7.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8.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자녀 돌봄을 위해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직무수행의 특성상 자녀 양육에 전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으나,

현행법상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맞벌이가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또는 가정의 형태에 따라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거나 부모의 입원 등 장기 부재, 모(母)의 출산, 아동학대피해위기아동 가정 등 양육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들임.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개별 공무원 가정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³⁾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에 추가하는 것은 다른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2024년 9월 기준으로 우선연계 이용대상자가 전체 아이돌봄서

3) 현행법상 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요건에 해당할 경우 우선 제공을 받을 수 있음.

비스 이용가구의 88.0%⁴⁾에 달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그만큼 일반대기자의 대기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현실적으로 공급량이 한정된 아이돌봄 서비스 여건을 고려할 때, ‘우선제공대상’은 사회취약계층 또는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해당 가구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9

4) [참고자료] 아이돌봄미 우선 연계 현황

【참고자료】

< 아이돌보미 우선 연계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전체 118,126가구 중 104,043가구 연계(88.1%)

(단위 : 가구)

연도	합계	한부모	조손 부모	장애 부모	맞벌이	다자녀	청소년	기타 양육 부담	일반	기관 연계
2024년	118,126	18,914	4	1,970	52,772	30,378	5	1,804	10,935	1,344

주1) '기타양육부담 가구'는 부·모의 질병, 입원(기요양 포함), 군복무, 재감 등의 사유를 말함.

주2) 우선 연계 대상 요건 중복 시 한부모, 조손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다자녀, 청소년 순(표의 왼쪽부터 나열된 순)으로 집계. 예를 들어, 한부모+다자녀 가구인 경우 한부모로 집계

자료: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 지원(돌봄수당) 실적 >

	예산 (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1년	258,054	여성가족부, 지자체	서비스 이용 가구 : 71,789가구
'22년	277,772	여성가족부, 지자체	서비스 이용 가구 : 78,212가구
'23년	281,874	여성가족부, 지자체	서비스 이용 가구 : 86,100가구
'24년	384,222	여성가족부, 지자체	서비스 이용 가구 : 118,126가구